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35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596호)	조지연의원	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760호)	조지연의원	2025. 10.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 회부(2025. 11. 18.)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25. 11.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라. 오인 표시·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u>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③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단서 신설>

2. 3. (생략)

② (생략)

1. -----

----.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